瑞山市災難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1.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2. 提出日字 : 1998. 8. 20

3. 提案理由

○ '98.5.2일 제정 공포된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일부규정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함.

4. 主要骨子

○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함.

○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 작성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함.

5. 檢討意見

o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써,

o 현행 조례 내용중에 지방자치법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110조(예산의 운영등)및 동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서 제출)와 상충된 부분이 있으므로 규정에 맞도록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관리계획 수립 의회에 제출하고(지방자치법), 출납폐쇄 3월이내 기금 결산서 작성(지방재정법),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며(지방재정법시행령), 기금의 회계 관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o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